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산지복구비 미예치

기 관 명 울산광역시 ○구, ○○군

내 용

「산지관리법」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는 자는 미리 토사 유출의 방지조치,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(이하 “복구비”라 한다)을 예치하여야 하며,

같은 법 제38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매년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후 이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이미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과 제39조에 따라 복구비는 산지의 면적에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러나 울산광역시 ○구청은 [붙임]과 같이 (주)○○○○○○ 대표 ○○○의 일반주택 용도의 산지전용허가기간(2016. 7. 29.~2019. 1. 31.)이 1년 이상인데도,

2016년에 예치한 산지복구비 18,367,000원과 2017년도 복구비 산정기준(산림청 고시 제2017-22호, 2017. 3. 6.)에 따라 산정한 복구비 19,823,000원과의 차액 1,456,000원을 추가로 예치받지 않는 등 총 2건의 산지복구비 102,170,000원을 예치받지 않고 있다.

울산광역시 ○○군은 아래 표와 같이 ○○○의 단독주택 용도의 산지전용 허가 기간(2016. 8. 12.~2018. 7. 31.)이 1년 이상인데도, 2016년에 예치한 산지복구비 6,640,000원과 2017년도 복구비 산정기준(산림청 고시 제2017-22호, 2017. 3. 6.)에 따라 산정한 복구비 7,166,000원과의 차액 526,000원을 추가로 예치받지 않는 등 총 5건(연번 1~5)의 산지복구비 19,152,000원을 예치받지 않고 있으며,

또한 [붙임]과 같이 ○○○의 단독주택 용도의 산지전용협의시 인·허가 통보(2017. 10. 30.) 후 30일 이내에 산지복구비 14,941,000원을 예치하도록 하였는데도, 2018. 2. 26. 감사일(인·허가 통보 후 4개월 경과) 현재까지도 예치받지 않는 등 총 52건(연번 6~57) 956,583,000원을 예치(인·허가 통보 후 2개월~1년 10개월 경과)받지 않고 있다.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남구청장, 울주군수는

[시정] 미예치된 복구비 1,077,905,000원(○구청 102,170,000원, ○○군 975,735,000원)을 징수하고,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